

‘지역발전 이끌 일꾼을 찾습니다’

**선거별 정당 기호순(교육감 무소속은 기니디 순)으로 개재 **정당 개재 - 민: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힘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소속 정당별 색은 당 색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무소속 **교육감 후보는 ■로 통일.	후보자 사진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이름(나이, 소속 정당) 직업	김관영(52, 민) 전 국회의원	조배숙(65, 국) 전 국회의원	김윤태(58) 우석대학교 교수	서거석(67) 전 전북대학교 총장	천호성(55) 전주교육대 교수	우범기(58, 민)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김경민(67, 국) 전 인수위 지문위원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군산시장	전 당협 운영위원장	전 전북도의원	석정온천개발 김사	익산시장	(유)아름 대표	전 익산시장	익산시의원	정읍시장	전 전북도의원	전 정읍신림조합장	법무부 귀화면접관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당 정책위 부의장	전 국회의원	전 법사위 전문위원	전 북서부민포럼 공동대표	전 남원시장	전 김제시의회 의장	전 국회의원	특집신설법 연구원장	당 정책위 부의장	고산농협 조합장	전 전북도의회 의장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진안군수	전 전북도의원	한농대 현장교수	전 전북도의원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주군수	동부권 특위 위원장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장수군수	전 북도당 부위원장	전 남원시 부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유)일스타 대표이사	임실군수	전 순창축협 조합장	전 도의회 부의장	전 국가보훈처 차장	고창군수	전 전북도의원	부안군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info.nec.go.kr)
참고

내일까지 지선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가능

열람시 지역 구 · 시 · 군청 방문, 홈페이지 활용… 20일 최종 확정

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완료, 선거구역 변경 비용 제한액 재산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리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2,6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평균 1억

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2,6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평균

6,4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5,300만원, 지역구시 · 군의원선거 평균 4,4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 4,600만원, 비례대표시 · 군의원선거 평균 5,200만원으로 재산정 · 공고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 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된다.

/유호상 기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언론인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기자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 보도 등 금지) 제2항은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그 밖의 긴행물을 취재 ·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은 행위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 통신 · 신문 · 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윤리를 판단에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